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 장00 (000000-0000000), 핸드폰 판매업
주거 대전
등록기준지 논산시

검 사 위성국(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 변호사 채희철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6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00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신청자인 권00에게 10일 후에 1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7회에 걸쳐 309,95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피고인은 2009. 12. 30.경 대출신청자인 권00에게 6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1. 7. 경 원금 60만 원과 이자 40만 원 등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3,0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수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모두 209,80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해자 윤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피해자 윤00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박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박00이 빌려간 돈을 제

때 갚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몰래 사채를 쓴다는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버리겠다.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겠다. 찾아가는 날에는 각오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박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박00가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당신 엄마 머리통을 부숴버리겠다. 애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아는 동생들을 보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김0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2012. 1. 2.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00이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니네 부모한테 찾아가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2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제일은행 천호지점에서 김00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고, 2011.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김00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고, 201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00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고, 2011. 10. 7.경 서울 송파구

0000 00길 00-0 이00의 집 앞에서 이00으로부터 그 사람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00, 윤00, 박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증제2호 내지 증제7호 대포통장 및 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증제8호 거래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제19조 제3항,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49조 제7항,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대출액의 3-40% 이상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연 3,000% 이자율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이자율을 강요하여 경제적 곤궁에 처한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점, 이를 위해 차용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칠 듯한 협박을 마다하지 않고 행한 점,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채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폭리와 협박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과 같이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사채업에 나선 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그런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처해 진다면 이와 같은 불법 사채업의 근절은 요원하기만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이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병과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병철 _____